「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 ('26.9.15.시행) 주요 내용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기간, 치유휴직 신청기간도 1년 연장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법 시행일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청·지원 절차

피해자 인정 신청

↓

피해자 인정 결정 통지

↓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 지원 신청

지원 언어

한국어 · 日本語 · Русский · English · 中文 · فارس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Notice on Victim Recognition Application & Related Support Regarding the October 29 Itaewon Disaster

자세한 내용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누리집
(https://1029itaewondisaster.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26.9.15.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인정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치유휴직 신청 등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Support Group for the Relief & Remembrance of 10·29 Itaewon Disaster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Support Group for the Relief & Remembrance of 10·29 Itaewon Disaster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3.16.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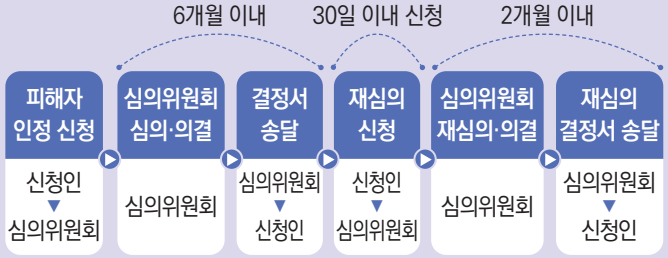
신청 대상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민원안내실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팩스 접수	02-2100-4053
이메일 접수	itwsupport@korea.kr

신청 절차



관련 문의 : 02-2100-4043, 4057

지원 언어
한국어 · 日本語 · Русский · English · 中文 · فارسی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3.16.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법 제2조제2호)
-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법 제2조제3호나목)

신청 방법

- 신청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서면 제출**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가족의 경우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 피해자의 경우 본인(우선)이 신청

지급 기준

-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산정

관련 문의 : 02-2100-4048

지원 언어
한국어 · 日本語 · Русский · English · 中文 · فارسی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신청 안내

신청 기간

기존 신청 기간에서 1년 연장되어
2028.9.16.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치유휴직**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
- **고용유지비용**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 **치유휴직**
 휴직기간 6개월 이내
 ※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25년 치유휴직 사용자 포함)
- **고용유지비용**
 치유휴직자,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치유휴직**
 휴직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비용**
 사업주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신청
 ※ 치유휴직 종료 후 일괄 또는 치유휴직 기간 중 매월 단위 신청 가능

관련 문의 : 02-2100-4047, 4042

지원 언어
한국어 · 日本語 · Русский · English · 中文 · فارسی